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6.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29.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1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한정애의원)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사기와 공갈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

을 삭제하는 개정안의 경우, ‘해악성’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해악성이 큰 ‘사기와 공갈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장물취득 등의 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해악성’이라는 추상적 단일 기준으로 죄명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사기와 공갈의 죄나 횡령과 배임의 죄’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장물취득 등의 죄’보다 해악성이 더 크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 간 10만원을 ‘횡령’한 경우가 1억원을 ‘절취’한 경우보다 해악성이 더 크므로, 전자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면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해악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범죄별 법정형을 비교해 보아도, 개정안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기와 공갈의 죄’ 및 ‘횡령과 배임의 죄’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장물취득 등의 죄’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자유형을 단순비교하면 개정안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되는 횡령 및 배임죄(제355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으로, 특수공갈죄(제350조의2)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절도죄(제329조)의 경우 6년 이하 징역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알선죄(제364조)의 경우 1년 이하 금고로, 특수절도죄(제331조)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횡령죄·배임죄나 사기죄·공갈죄의 경우를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나 장물죄보다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재산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는 여러 논의를 통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죄와 적용 배제 범죄의 합리적이고 정교한 구분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